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하여

공업진흥청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관
양 봉 환

1. 전기제품 표시용어의 한글화

1)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공산품중 전기제품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즉 전기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를 받지 않고는 제조 또는 수입이 불가능하며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가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과의 관계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동서냉전이 소멸된 이후 세계속의 경제화가 진전되고 국경없는 무역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상품이 세계시장으로 수출되고 외국제품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전기제품 역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 국내기업에는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자극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외국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은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전기제품의 작동방법, 주의사항, 기능 등이 외국어로 표기되어서는 국내 소비자에게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과 소비자활동의 증가로 외국어표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는 한글표기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 추진내용

가. 1차 한글표기안 제정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한글표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안전성이 요구되며 외국어표기가 심한 제품 35품목을 우선적으로 추진기로 하였다. 관련업계와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한글표기안을 마련하여 '91년 11월 25일에 공고하였다. 35개 품목은 신규로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92년 1월 1일부터,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2년 7월 1일부터 한글표기안에 따라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2차 한글표기안 제정

1차 작업때의 경험을 토대로 2차 한글표기안은 보다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1차 작업에서 제외된 제품중 한글표기가 필요한 172개 품목을 선정하여 작업을 추진하였다. 관련업계와 문화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표기안을 확정 후 '92년 6월 11일에 공고하였다. 172개 품목은 신규로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93년 1월 1일부터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93년 7월 1일부터 한글표기안에 의해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 주의사항 표시대상품목의 확대

전기용품의 위해의 우려가 높아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주의사항은 누구나 알기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의사항 역시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

어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의사항 표시대상이 27품목으로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이를 제조구분별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3) 한글화의 효과 및 관리

전기제품의 표시용어를 한글로 표기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있다. 우선 모든 사항이 한글로 적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의사항 또는 작동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사고나 고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부위가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제품의 사용이 쉬워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번 시험삼아 써보아야 하지만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한 제품에 내장된 각종 기능을 다양하게 활

용하게 되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공업진흥청에서는 이러한 잇점을 가진 한글표기가 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소비자와 제조자의 의견을 들어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공장 사후관리제도 및 형식승인유효기간 갱신제도 개선

1) 추진배경

성공적인 경제개발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단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

한글 표기 실례

품명	영문표기	기능	한글표기
텔레비전 수상기	Loop Antenna	UHF 방송수신용 안테나	동근안테나
	Main	2개국어방송시 한국어선택기능	국어(우리말)
	Mute	소리를 잠시 줄이는 기능	소리줄임
	Noise Reduction	화면의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	영상잡음 없앰
	Picture In Picturue	한화면에 다른화면 표시	동시화면
	Quick View	현재의 채널이전으로 복귀	앞채널
	Search	채널버튼으로 방송국 선정	방송국
	Skip	채널버튼을 누르면 기억된 채널만 선택	방송국기억
	Surround	입체적인 음의 현장감 재현	입체음향
앰프	Surround Volume	입체음의 출력조절	입체음량
	Remote Sensor	원격으로 조정기수신	원격감지
	Surround Speaker	입체음에 쓰는 스피커기능	입체음 스피커
튜너	Band	AM, FM, TV 등 방송선택	방송선택
	Beat Out	AM 녹음시 잡음제거	잡음제거
테이프테크	Dolby B, C	잡음제거회로	돌비/잡음제거
	Counter	테이프회전량 표시	회전량
	Rec Mute	녹음되지 않는 부분을 만듦	빙어리 녹음
복사기	Zoom	확대·축소 기능	확대/축소
	Auto Exposure	자동노출기능	자동노출
	Help	기능작동에 대한 설명	도움말
	Edge Erase	가장자리 삭제기능	테두리 없앰

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 또 정부에서 매사를 관여하는 것이 적합하지도 않다. 정부의 관리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효과적인 관리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전반의 자율화 시책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와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토결과 안전관리제도의 근본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업무를 민간부문에서 실시하도록 방향을 결정하였다.

2) 제도개선내용

가. 자율적인 사후관리 실시

전기용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제조구문별로 1종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을 한후 형식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상태에 대한 공장검사와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공장에 대해서는 2년마다 또는 공장등급에 따라 품질관리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산업계의 발전에 따라 이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도변경 내용>

	종 전	향 후
사후관리기관	시·도	제조업체
주 기	5, 3, 1년	매 년
사후관리기준	공장검사평가기준	개정된 공장 검사평가기준
사후관리내용	공장품질관리실태	공장품질관리 실태 및 제품의 품질상태

시·도지사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해당업체로부터 자체적으로 사후관리현황보고서와 공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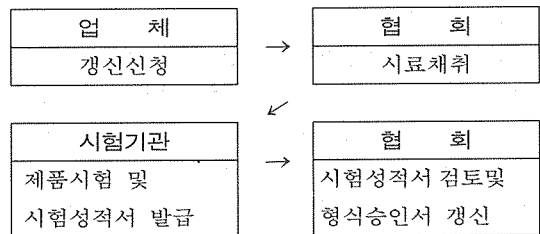
나. 형식승인유효기간갱신 업무위탁

현재까지 형식승인유효기간 갱신업무는 공업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해 왔다. 매년 2,000건이 넘는 갱신업무는 적지않은 업무부담이 되었다. 또한 유효기간 갱신업주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공업진흥청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조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에 갱신업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 내용

	종 전	향 후
신청기관	공업진흥청	한국전기용품 안전관리협회
갱신신청일	만료일 당일까지	만료일 2개월전
시료채취	업체	한국전기용품 안전관리협회
시험비용	업체	업체

○갱신절차



3) 제도개선의 효과 및 관리

제조업체에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업체에 모든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매년 실시하게 됨으로써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제품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품질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효기간갱신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제3자가 시료를 채취케 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일수 있고 유효기간갱신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단체에 유효기간갱신을 신청

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공업진흥청과 시·도, 협회는 사후관리 및 갱신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안전확보의 목적달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 상담 및 특별사후관리를 실시 할 계획이다.

3. 110V/220V겸용제품의 제조 및 수입금지

1) 추진배경

최근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능가하는 비율로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주요 정책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절감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용이하지 않다. 수력발전소는 수몰 등 환경변화와 건설비용이 막대하고 적절한 장소 선정이 쉽지 않다.

또한 금년 여름에 전력난으로 국민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었듯이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면서 전력예비율이 5% 이내로 낮아져 자칫 제한 송전을 해야할 사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다행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전소 건설이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도 막대함을 감안할 때 절전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용품중 110V/220V 겸용제품에 대하여 220V 전용제품의 생산 및 수입만 허용 하기로 하였다.

2) 110V/220V 겸용제품의 제조 및 수입금지

공업진흥청에서는 220V 전용제품의 생산에 따른 제조업체의 이행가능성, 새로운 제품설계에 따른 부담, 소비자의 이익, 한국전력의 승압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자료분석 및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였다.

공업진흥청은 제조업체, 동자부 및 한전 등과 협의를 거쳐 110V/220V 겸용제품 제조 및 수입금지 계획을 수립하여 '92년 9월 2일에 발표하였다.

전체적으로 8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냉장고 등 11품목을 먼저 '93년 1월 1일부터 220V 제품만 생산 또는 수입하도록 하였으며 '93년 7월 1일부터는 선풍기 등 15품목이 적용된다. '97년 1월 1일까지는 197개 품목이 220V 전용 제품만 생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92년 6월말 현재 220V로 승압된 전류가 공급되는 가구수가 80%에 이르고 있어 220V 전용제품의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겸용제품을 생산하므로써 생산비 및 전기소모가 증가되어 국가적인 손실이 적지 않았다.

향후 220V 전용제품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는 제조원가가 2% 절감되고 생산성 및 품질이 5~16%까지 향상되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 322억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S 부담 감소 등 부수적인 효과와 고방발생도 감소할 것을 감안할 때 제조업체는 큰 잇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제품을 110V로 사용할 경우 220V에 연결하여 사용할 때보다 평균 8~9%의 전기가 더 소모되어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아니라 겸용제품 생산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가분까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220V 전용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구조가 단순화됨에 따라 제품고장도 감소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승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는 부담이 없지 않으나 송전에 따른 손실량이 감소되고, 220V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전력의 효율이 높아져 연 37만 Kwh의 전력생산을 증대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